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2147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2147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839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1가합438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6. 7. 2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839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N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무렵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운용 등 일체를 피고에게 일임한 원고로서는 위 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등의 조달과 무관하다고 보아 그 보증금 합계액 26억 3,2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위반, 증명책임의 원칙,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차임 및 관리비 수입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1993. 1. 28. 작성한 위임장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임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의 건물 건축비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 무렵에는 피고로 하여금 대출금 내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건축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도록 일임하되 원고는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토지지분에 상응하는 소유지분을

취득하고(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비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건물 완공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관리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여전히 피고에게 일임하여 이후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 피고가 그 책임 하에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운용과 반환 등 일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 한편, 원고가 위 위임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위임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대차보증금의 변제를 위한 배당금, ②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위한 배당금, ③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수입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 합계 2,013,837,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과실수취권을 갖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비용 등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의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임차인인 근로복지공단과 에스지아이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지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 단독으로 부담하는 의무라는 전제 아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된 위 보증금의 반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피고의 상고이유 제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및 관리비 수입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